

의안번호	제 144 호
의결 연월일	. . . (제 회)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임병운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2년 11월 일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병운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
----------	-----

발의연월일 : 2022년 11월 14일

발 의 자 : 임병운 · 박경숙 · 김꽃임 · 김국기 ·
이양섭 · 이의영 · 이종갑 의원

1. 제안이유

- 이 조례의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술상 오류를 바로잡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2조부터 안 제5조)
- 별지 서식의 기술상 오류와 용어 등을 정비하여 전문개정함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 조례안예고 : 생략(「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호)
- 협 의 :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 에너지과
- 비용추계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붙임)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이라”를 ““도지사”
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
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별표에 따
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서식으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③ (생략)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 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공급자 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 3부

2.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 확인) ① -----

-----.

1. 별지 서식-----

2. (현행과 같음)

② -----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수수료) -----
----- 별표에 따른 -----

-----.

1. ~ 3.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6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전시 및 안전확인신고를 위한 제품시험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
3. 수출을 목적으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4. 제14조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시험능력을 갖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시험을 실시하여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
6.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제4항제1호

○ 사 유

- 조례안의 개정 내용은 관계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기술적인 정비 사항임
- 위 관련 규정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결론적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